

「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9. 5. 13. 전부개정 판 (시행 2019. 3. 1.) → 2022. 3. 7. 개정 판 (시행 2022. 3. 7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35/compare?from=912&to=1288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2:14:20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교육과정인증위원회) 1.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부총장(위원장), 교무처장(서기), 단과대학장, 스미스학부대학장,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, 외부위원 3인, 교육혁신팀장(간사)로 구성한다. 2.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인증체계와 기준을 심의하고 인증을 판정하거나 취소하며 인증유효기간을 변경하는 등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의 인증 업무를 결정한다.	제7조(교육과정인증위원회) 1.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<u>교육혁신원장(위원장)</u> , <u>교육인증센터장(서기)</u> , <u>교육인증센터 연구원(간사)</u> , <u>교무부처장</u> , 단과대학장(2), 스미스학부대학장, 외부위원(3)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-03-07> 2.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22-03-07> 가. <u>인증기준,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</u> 나. <u>인증평가단의 구성,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u> 다. <u>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</u> 라. <u>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</u> 마. <u>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사항</u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7조(교육과정인증위원회) 1.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(위원장), 교육인증센터장(서기), 교육인증센터 연구원(간사), 교무부처장, 단과대학장(2), 스미스학부대학장, 외부위원(3)로 구성한다.
2.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- 가. 인증기준,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
- 나. 인증평가단의 구성,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다.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
- 라.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
- 마.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사항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